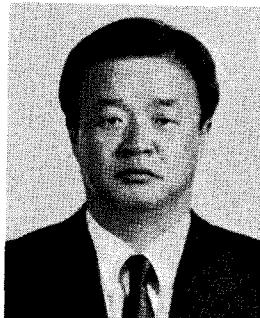


소련상표

제도해설(完)



宋 晚 鎬
(辨理士)

目 次

- I. 소련상표법상의 상표의 개념
 - II. 상표권의 취득
 - III. 상표권과 보호
-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號〉

〈前號에서 계속〉

III. 상표권과 그 보호

1. 상표권자의 권리와 의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상표를 가지는 외국인과 법인들뿐 아니라 소련국영 기업, 기관 및 조합은 소련 전영토내에서 그 상표를 사용할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등록증의 유효기간 전체에 걸쳐, 상표소유자는 시행법령에 따라 유사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불법적인 사용의 중지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등록상표 소유자는 법인지위를 가지고 제조 혹은 유통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조합에 상표사용권(License)을 주거나 상표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그 상표를 해외에서 출원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양도할 수 있다. 라이센스는 라이센싱 계약상 상표사용자(Licensee)의 상품의 품질보다 열악하지 않도록 상표권자가 사용자에게 품질관리감독을 이행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허용된다.

라이센싱 계약, 상표권의 양도 및 상표해외 등록출원권의 양도계약은 소련 국가 발명 및 발견 위원회에 모두 등록되어야 한다.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들은 무효로 간주된다.

상표 소유자는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의 일부에 대해서도 상표권을 양도할 수 있다.

상표 소유자의 권리는 외국인과 법인뿐 아니라 제조 및 유통업무에 종사하고 법인지위를 가지는 국영기업, 기관, 협회와 협동조합 및 기타 사회기관에 양도될 수 있다.

상표 소유자는 등록상표를 자기의 상호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소련의 1974년 상표법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의무원칙이 도입되었다. 등록상표의 사용이란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에 실제로 상표를 부착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가 등록일로부터 5년동안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련 국가 발명 및 발견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의한

진술을 근거로 하여 그 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표등록의 취소를 결정할 때, 소련 국가 발명·발견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 불사용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자연재해, 생산 계획의 변경 및 필수적 원료의 부족 등.)

— 외국인인 상표권자가 소련에서 상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신문, 잡지, 광고물에 상표의 광고, 소련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나 박람회에 상표 부착 상품의 전시 등)

2. 상표권의 독점적, 지역적 그리고 시간적 특성

그 법적 본질에 따라, 상표권은 소련에서 독점적 권리의 범주에 속한다. 등록부에 상표의 등록은 그 상표의 소유자에게 제3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소극적 권리)와 소련 영토내에서 지정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적극적 권리)를 준다.

소련 상표법은 독점적 권리의 내용이나 권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의 기본적 행위들은 독점권이라는 일반적 개념과 경제적, 상업적인 경험상 상표권자의 독점적 권리라고 인정된다.

— 상품과 서비스에 부착사용(포장(packing)에 사용을 포함.)

— 소련영토내에서 상표를 부착한 상품과 서비스의 상업적 유통을 위한 도입

— 소련에서 열리는 전시회나 박람회는 상표 부착 상품의 공공 전시

— 비즈니스 서류와 상업통신문에 그것들을 사용하고, 상품명으로 그것들을 구체화하고, 그것들을 인쇄물과 음성 광고물에 사용하는 등에 의해 광고의 수단으로 상업활동의 과정에서 상표의 사용.

상표의 독점적 권리범위는 소련 영토에 제한

된다. 소련에서 상표권의 효력은 일개 공화국 (소련은 15개 공화국으로 구성되었음)의 영토에만 한정될 수 없으며 언제나 소련 전 영토에 걸쳐 미친다.

상표권은 시간적 인권리로서 시간상의 제한을 받는다.

상표등록존속기간은 상표등록출원서가 VN-IIIGPE에 제출된 날 즉 출원일로부터 10년간이다. 그러나 회수에 제한받지 않고 10년씩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상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은 존속기간의 마지막 해(Last year)에 제출되어야 한다.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출원은 출원인 기업의 레터헤드(lettethead)를 사용하며 표준형식에 따라야한다. 이 형식은 소비에트 출원인들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고, 외국출원인은 소련 상공회의소에 의해 제공되며 대리인에 의해 사용된 특별한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갱신등록 출원서에 첨부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등록증 원본

— 지정상품(혹은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사용을 입증하는 서류

— 출원인기업의 정관초본 혹은 당해 기업의 법인증명 (소련 내국인에만 해당)

— 관납료 영수증

등록증원본을 분실한 경우에, 소련 국가 발명 및 발견 위원회에 의해 발행된 등록증의 재발행본의 출원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소련에서 그 상표의 사용을 입증하는 서류에는 그 상표의 존속기간 중 사용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입해야 한다.

갱신등록출원서는 그 등록증 원본 혹은 재발행본이 첨부서류에서 빠지면 접수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른 서류들이 그 출원서에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VNIIGPE(연방심사조사국)에 의해 상표소유자에게 출원서 접수일로부터 한달이내에 부족한 서류에 대한 보정시기가 보내어진다.

상표소유자는 VNIIGPE에 의해 그 보정지

시서가 우송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VNIIGPE로 그 서류들을 우송해야 한다. 그 상표 소유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요청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출원서와 첨부된 서류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상표소유자에게 반송하면서 그 이유를 통지한다.

존속기간갱신은 VNIIGPE에 모든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완료된다. 그렇게 하여, 상표등록의 존속기간은 중단되지않고, 갱신된 기간은 이전 기간의 종료일로 부터 시산된다.

존속기간 경과시 상표소유자는 추가요금을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6개월의 갱신출원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때에 추가납부 요금은 50% 할증된다.

유예기간 6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그 상표등록은 소멸된다. 상표등록의 존속기간은 지정상품별로 연장될 수 있다.

등록상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무효로 된다.

—상표등록이 이의신청(우리나라의 무효심판 청구에 해당)의 결과로서 무효되는 경우

—상표가 그 등록일로부터 5년동안 사용되어 직권으로 혹은 이해관계자의 청구로 취소되는 경우(그러나 아직 직권취소 사례는 없음.)

—등록증이 상표법을 위반하여 발급되었다는 것이 발견된 경우

3. 상표권에 대한 분쟁의 해결

상표법(제34조)는 상표등록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두가지 사유, 즉 무효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즉 무효주장을 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과 신청적격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번째 무효사유는 상표법 제15조(A)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등록 또는 선출원된 상표와 그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도 등록이 허여된 상표에 대하여 해당되는 것으로 상표공보에 공고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개 시민들뿐 아니라 정부 부처, 국가 위원회, 기업, 기

관, 협회 및 연구소들은, 즉 누구든지 소련 국가 발명 및 발견위원회 상표의장국에 이의신청을 제출함으로서 상표의 등록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두번째 무효사유는 상표법 제15조의 (B)항에서 (H)항까지에 해당되는 사유로서 상표권 존속기간 중 언제든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인에 한정하여 신청적격이 인정된다.

이의신청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심리되나 실제로는 소명자료 제출요구시 지정기간을 2개월 부여하며 그 지정기간을 2개월간 연장 받을 수 있으므로 통상 6개월이 소요된다.

상표의장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련 국가 발명 및 발견 위원회의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이 최종심이 된다.

소련에서 상표등록의 효력에 관한 어떤 분쟁들도 소련 국가 발명 및 발견 위원회에 의해 행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의신청이나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하고 모두 소련 국가 발명 및 발견 위원회에 제출되고 거기에서 처리될 뿐이며 법원에 항고하거나 법원에서 판단받을 수 없다.

필요하다면 “심사관 위원회(board of examiners)” (소련 국가 발명 및 발견 위원회 위원장의 자문기구)에게 그 이의신청의 타당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상표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등록이 무효로 된다. 상표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한 관납료금은 70루블이다.

소련에서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분쟁은 대부분의 경우 등록상표의 불법사용을 금지할 권한을 갖는 소련 국가 발명 및 발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출함으로서 행정적으로 해결된다. 물질적손해가 수반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분쟁은 소련 민법 (Fundamentals of Civil Legislation of the USSR and of Union republics) 및 소련 민사 소송법(Codes of Civil Legal Proceeding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other Union republics)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해결될 수 있다.

소련민사소송법에 근거한 상표권 침해를 포함하는 민사분쟁들은 지방인민법원(District People's Court)과 같은 제 1심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표침해 관련 소송은 제 1심급으로서 상급심의 법원에서 처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련에서 등록된 상표에 대한 몇몇 분쟁들은 Moscow City Court에 의해 심리되었고, 법원판결에 대한 불복항소는 RSFSR 대법원에 의해 심리되었다.

동구권 국가들의 기업과 기관간의 상표권에 대한 분쟁은 1972년 5월 26일에 불가리아, 헝가리, 동독, 폴란드, 루마니아, 몽고, 체코, 소련 정부들에 의해 체결된 경제, 과학 그리고 기술 협력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민사간분쟁의 중재에 관한 협약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재(Arbitration)에 의해 해결된다.

상표권의 침해에 대하여 법원은 그러한 침해 행위의 중지와 원상 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특히,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수입, 판매, 전시를 금지하는 명령이나 그러한 상품의 압류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침해자로 하여금 상표권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표권이 침해되었다고 해서 소련기업이나 기관이 법정에 가는 것은 드물다. 이미 언급한 바와같이, 그러한 분쟁의 대부분은 행정적으로 해결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건을 다룸에 있어 소련의 판례는 한정되어있다.

오히려 이와 같은 분쟁은 주로 외국기업들 사이에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 예로 소련에 등록된 상표 "Agfa"의 상표권자가 벨기에 회사 "Gewert-Agfa NV"에 대해 1966년에 Moscow City Court에 제출한 소송을 들 수 있다. 1965년 모스크바의 국제 박람회에서 벨기에 회사가 "Agfa"라는 단어를 상표로 불법사용한 것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동독의 기업인인 원고는 벨기에 회사에 의한 "Agfe"상표의 불법적 사용이 원고기업의 권리를 침해했고, 고객들을 기만하였으며, 그리하여 그 기업의 명성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Moscow City Court 민사부는 모

스크바의 국제전람회동안 벨기에 회사에 "Agfe"란 상표를 그들의 상표로 사용한 것을 불법으로 간주함으로써 VEB Filmfabrik Wolfen에 의한 청구를 인정했다. 그 판결에서 법원은 그 전람회의 주최자인 소련상공회의소에게 모든 전람회 카탈로그와 다른 공식서류들로부터 "Agfa"란 단어를 빼도록 지시했다.

상표의 불법사용은 대개 유죄상태에 대해 발생하는 형사상의 책임을 수반할 수 있다. 그러나 동안 그 침해자는 그가 의도적으로 혹은 과실로 그랬는지에 상관없이 유죄로 판결될 수 있다.

상표가 저질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그 피고의 행위는 예를 들어 사기(Art. 93 and 147 of the Crimina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고객기만(Art. 156 of the Crimina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혹은투기(Art. 154 of the Crimina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로 한정될 수 있다.

형사법에 기초하여, 그 침해자들은 상표의 불법적 사용과 관련된 사회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교정노욕(corrective labor), 혹은 300루블의 벌금(Art. 155, Ch. 6 of the Criminal Code of the RSFSR)형을 받을 수 있다.

상표법 제2조의 행정적, 경제적 제재들은 다양한 처벌을 보여주고,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되어야 한다.

행정적 제재들은 서면경고(Written warning) (Art. 13 of the Fundamentals)를 포함한다. 벌금은 10루블이하이며, 정부관리의 경우에는 50루블이하이다.

외국회사와 소련 기관사이의 무역계약의 경우에, 쌍방은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중재자의 기능은 소련상공회의소 외국무역 중재위원회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

발명하는
국민이 됩시다